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블라인드 일반계약직  
직원 6차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 1 채용개요

## □ 채용분야 및 규모

○ (채용인원) 총 8명

구 분		직무 내용			채용인원	계약기간
					8	
본부	서울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정책 개발				3	
	기획팀	운전 수행인력	운전원 (전일제)	본부 전용차량 운전	1	2022.01.13. ~ 2023.01.12.
	어린이집 운영팀	보육직 대체인력	보육교사 (전일제)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및 지원보육	1	2022.01.17. ~ 2022.04.18.
		보육직 대체인력	조리원 (전일제)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조리원 대체근무지원	1	2022.01.17. ~ 2022.05.31.
소속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5	
	어린이집	새우개 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4시간 영아반 등 시간제 보육, 전일제 보육 보조	1	2022.01.17. ~ 2022.12.31.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4시간 영아반 등 시간제 보육, 전일제 보육 보조	1	2022.01.17. ~ 2022.02.28.
		송파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4시간 영아반 등 시간제 보육, 전일제 보육 보조	1	2022.01.17. ~ 2022.02.28.
			보육교사 (전일제)	담임, 장애아전담, 야간연장, 시간제반 전담 보육	1	2022.01.17. ~ 2023.01.16.
		영등포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4시간 영아반 등 시간제 보육, 전일제 보육 보조	1	2022.01.17. ~ 2022.02.28.

- \*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별로 필수자격요건이 상이하니 자세한 지원자격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동시 진행되는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전형에서는 직무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내부기준에 따라 모집인원 5인 이하일 시 최대 2명까지 선발 가능합니다. 예비합격자 지위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 **본부 기획팀 운전원(전일제)**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 본부 어린이집운영팀 보육직대체인력 보육교사(전일제)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 본부 어린이집운영팀 보육직대체인력 조리원(전일제)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새우개하나어린이집 보육교사(시간제)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서대문, 송파, 영등포든든어린이집 보육교사(시간제)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송파든든어린이집 보육교사(전일제)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으로 선발

\* 근무 평가 등은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름

○ (근무기간) 직무별 상이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복무규정에 따름

\* 직무별 상이

		구분	근무시간
본부	어린이집 운영팀	보육교사 (전일제)	09:00 ~ 18:00
		조리원 (전일제)	09:00 ~ 18:00
어린이집	새우개 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13:30 ~ 18:00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15:00 ~ 19:30
	송파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15:00 ~ 19:30
		보육교사 (전일제)	09:00 ~ 18:00
	영등포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간제_4시간)	07:30 ~ 12:00

※ 각 소속기관별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 (보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름

○ (근무지) 운전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부

본부 어린이집운영팀 보육교사, 조리원 : 7개 어린이집 순환

보육교사, 조리원 : 해당 소속 어린이집

## 2 응시자격

---

###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1\] 참고](#))
-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2022년 1월 17일 이후 근무 가능한 자
  - \* 본부 운전원의 경우 2022년 1월 13일 이후 근무 가능한 자
- 상기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 채용형태별 응시 자격요건

- (기능계약직) 기능계약직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별도로 둠 ([\[붙임 2\] 참고](#))
- (일반계약직나급) 일반계약직나급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별도로 둠 ([\[붙임 2\] 참고](#))
  -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임용 불가

### 3 우대사항 및 자격증

#### □ 우대사항

대상	우대자격 요건	가산비율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전형 만점의 5~10%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자	면접 전형 만점의 10%	장애인증명서

※ 우대 사항은 중복 적용되나 최대 10점까지 적용

예) 취업지원대상자(5)+ 장애인(10)= 총 15점이나 최대가점 10점으로 적용

※ 모든 가점은 해당 전형의 과락이 아닌 자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입사지원서에 개명 전·후 성명 기재

## 4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 □ 채용전형일정

구분	추진 일정	결과발표	비고
채용공고	‘21.12.28(화)~‘22.1.8(토) 10:00	-	-
입사지원서 접수	1.3(월)~1.8(토) 10:00	-	-
서류전형	1.8(토)	1.8(토) ~ 1.9(일)	적부판단/정량·정성평가 (필수 자격 증빙 서류 제출)
편의지원 확인	1.9(일)	-	장애인 지원자 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1.10(월)	-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 증빙을 위한 서류 필수 제출
면접전형	1.10(월)	1.12(수) ~ 1.13(목)	-
이의신청	각 전형 결과발표 이후	-	[붙임 4] 참고
임용등록	1.13(목) ~ 1.14(금)	-	채용신체검사(확인)서 및 신원진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https://seoul.pass.or.kr>) 및 지원자 메일을 통해 공지 예정

※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면접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 **전형별 일정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공지 예정**

※ 면접전형 당일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 등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원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원본과 사본을 동시 지참 후, 원본 현장 확인 완료 시 사본 제출 가능). 미제출 시 기본자격, 우대사  
항,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 서류전형

전형 단계	내용 및 기준	비고	선발인원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부)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li> <li>▪(정량/정성)자격 및 경력사항/자기소개서 평가 * 공란, 동일기호 반복, 문항별 100자 미만 작성 등</li> </ul>		15배수

○ 면접전형

전형 단계	내용 및 기준	비고	선발인원
역량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원, 보육교사, 조리원</li> <li>: 경험면접(40%)+ 상황면접(60%) * 조직이해,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등</li> </ul>		1배수 이내

□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

전형 단계		합격자 결정 기준
서류 전형	적/부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
	정량/ 정성	(정량) 자격사항 평가 (정성)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평가
역량 면접	역량 면접	▪운전원, 보육교사, 조리원: [경험면접(40%)+ 상황면접(60%)] + 지원자별 해당 가점
	과락 기준	▪과락기준: 가점 적용 전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① 장애인 > ② 취업지원대상자

- ※ 필수서류(입사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자격 증빙서류 등) 미제출시 각 전형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예정
-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 면접전형의 가점은 과락이 아닌 자에 한해 적용함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 접수 및 지원 방법

- (공고 기간) 2021. 12. 28(화) ~ 2022. 1. 8(토) 10:00
- (원서 접수 기간) 2022. 1. 3(월) ~ 2022. 1. 8(토) 10:00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https://spass.brms.kr>)
  -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문 의 처)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또는 담당자
  - ※ 공고 내용 관련 : 가급적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FAQ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유선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채용담당(☎ 02-6949-6342)

## □ 제출서류

구분	주요 내용	
입사지원서 접수 (온라인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li> <li>▪필수 자격 증빙 서류(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조리원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 운전원의 경우 면허증)</li> <li>※ 신입 및 경력지원자의 기본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입사지원 홈페이지 가입 시, 자격 증명·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거부 시 응시 불가</li> </ul>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대사항 증빙서류(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숨김 처리 필수)</li> </ul>
최종면접 대상 (가린 정보가 없는 원본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li> </ul>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빙서류 원본 제출</li> <li>▪응시자격 증빙서류: 자격증(원본 및 사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li> <li>▪우대사항 증빙서류: <b>[붙임 2]</b>의 동점자 우대경력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li> </ul>
최종합격자 대상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공무원채용신체검사(확인)서 1부</li> <li>▪최종학력증명서 1부</li> <li>▪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1부</li> <li>▪신원진술서(자필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li> <li>▪별도 사진(반명함판) 1매</li> <li>▪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li> <li>▪코로나음성결과서 1부</li> </ul>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 ※ 경력은 입사지원 시 작성한 내역 중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21.12.28.) 6개월 이내 근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 (전국 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을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해야 함
-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 또한 **공고일 기준('21.12.28.)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양식을 준용

## 6 기타 사항

- 가.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전자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 금지  
\* 개인 인적사항이 서류상에 표기될 경우 채용 전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본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보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름
- 라.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 완료 시점('22. 1. 17.)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함  
\* 본부 운전원의 경우('22. 1. 13.)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함
- 바. 응시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최종합격 예정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사.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recruit@seoul.pass.or.kr)할 수 있으며,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 예정  
\* 최종합격자의 경우 반환절차 별도 안내
- 아.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5]**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recruit@seoul.pass.or.kr)

##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결격사유

### <공통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4.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2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2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2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취업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 26.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자

**<별도규정>**

**1. 보육교사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바.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 미성년자

## [붙임 2] 직무별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근무지	구분	직위(책)		직급	필수자격
본부	기획팀	운전 수행인력	운전원	기능계약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경력 무관)</li> </ul>
	어린이집 운영팀	보육직 대체인력	보육교사	일반계약직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경력 무관)</li> </ul>
		보육직 대체인력	조리원	일반계약직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경력 무관)</li> </ul>
소속 기관	어린 이집	새우개 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반계약직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경력 무관)</li> </ul>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반계약직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경력 무관)</li> </ul>
		송파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반계약직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경력 무관)</li> </ul>
		영등포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반계약직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경력 무관)</li> </ul>

※ 보육교사 2급: 우측의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p>● 2022년 1월 17일 기준, 만 2년 이상의 업무공백이 있는 경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수료 후 수료증(또는 교육 신청원료 증빙서류) 필수 제출. 입사지원 시 수료번호를 입력하고, 면접 시 수료증 제출.</p>	

## [붙임 3]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 : 채용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2. 대 상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지원자
3. 접수방법 : 개인별 이메일 접수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회사 이메일(recruit@seoul.pass.or.kr)로 송부
  - hwp 및 서명한 스캔본 pdf 파일 모두 제출
4. 접수기간
  - 서류전형: '22.1.10(월)~'22.1.12(수) 18:00
  - 면접전형: '22.1.14(금)~'22.1.18(화) 18:00
5. 작성내용 : 지원번호(수험번호), 지원분야, 인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6. 이의신청서 양식 : 별첨
7. 이의제기 처리대상
  - 이의제기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 이의제기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 등이 가능한 경우 답변 가능

###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필요 시 Q&A 에 이관 후 답변)
  - 관련근거 미제시
- ②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 ③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
  -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이 인정되는 경우

